

[별표] <개정 2017. 11. 14.>

반납액의 산정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

구분	반납액
1.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	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
2.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 전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	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
3.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가산기간 종료 전일까지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	$\text{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 가산 월수} - \text{의무복무 가산기간에 복무한 월수}}{\text{의무복무 가산 월수}}$

비고: 제3호의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.